

수정안조문대비표

제 안 안	수 정 안
<p>제 2 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</p> <p>②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</p> <p>③위원은 관련 실, 국장, 지방의 회의원, 전문분야교수,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위촉 한다</p> <p>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이 된다</p>	<p>제 2 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</p> <p>②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</p> <p>③위원은 관련 실, 국장, 전문분야교수,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 하며 도지사가 위촉한다</p> <p>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이 된다</p>